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 '98년 12월 3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98년 12월 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1998년 12월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과장 조택용

가.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개정 ('98. 1. 15)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의 제공 등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므로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안 제11조)
 - 설치가능시설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안 제12조)
 - 인근설치 범위 : 당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

-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안 제13조)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교부
 - 무상 사용기간 : 납부비용을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 만료일

-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신고 및 폐지 신고(안 제15조, 제16조)

- 보조의 대상 (안 제17조)
 - 대 상 :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3.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전 영 회

- '98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 구조례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고위험 및 시간적 손실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짐.

- 법률적 검토 내용을 보면 제11조 노외 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종류를 명시하여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므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참고로 서울 강북구, 부산 동구, 동래구, 주차장 조례는 본 개정조례안과 유사함.

- 제3장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주차장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시 조례에서 삭제함에 따른 구조례에 보완 신설됐으며,

타 자치구 인근 설치범위를 보면 서울 성북구와 관악구의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도보거리 150미터로 본구 개정 조례안과 같고 부산 동래구 경우 직선거리 200미터 도보거리 400미터로 우리구와 약간 상이합니다.

- 제 13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무상사용증서식을 신설하였고
-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은 시조례의 삭제로 구조례에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조항은 시조례가 삭제됨에 따라 타 자치구(서울 강북구, 부산 동래구, 동구) 주차장 조례중 내용의 필요한 조항만 보완 인용되었으며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보완 되었고
- 제4장(보조) 제17조 보조의 대상 및 동조례 제18조 보조의 방법과 동조례 제19조 보조의 반환조례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홍수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표준공사비, 지원금액과 자기부담액, 설치지역,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지역,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은 입법 체계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 제5장 보칙 제20조 과징금처분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제 17조 제2항에 의거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의 1/5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21조 과태료처분 규정은 주차장법 제30조로 별도의 가감기준이 자치법규로 위임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인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조정부과토록 규정됨을 볼 때, 본 신설규정은 꼭 필요로 하는 내용만 명기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 타 사 항 : 없 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조례 증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8년 11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개정('98. 1. 15)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여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안 제11조)
 - 설치 가능시설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안 제12조)
 - 인근 설치범위 : 당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
-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안 제13조)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
 - 무상사용기간 : 납부비용을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 만료일
-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신고 및 폐지신고(안 제15조, 제16조)
- 보조의 대상(안 제17조)
 - 대상 :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안 제20조, 제21조)
 - 과징금 및 과태료의 유형별 처분기준 마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및 제12조를 제5장제20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과징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를 “과징금은 별표 1에 의거 부과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로 하며, 제11조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및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①구청장은 영 제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시조례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규정을 신고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척 1200분의 1이상일 것)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조

제1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제18조(보조의 방법) 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1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3조제1항 관련)

9cm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6cm

- 건축물 위치 :
- 사용자 :
- 사용기간 :
- 이용주차장 :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인)

글씨 - 김정색

주의사항

1.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명 칭		⑥주차장의형태	
부 설 주 차 장	⑦위 치		⑧ 규 모	(대 m ²)
	⑨이용예정일		⑩	
				수 수 료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 구비서류 : 1. 주차시설 배치계획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200분의 1도 이상)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의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청)인	처리기관(구청장)	비고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고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교 부</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접 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검토(대장확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결 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고필증작성</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접수대장 등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현장확인병행</div> </div>

[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부설일반주차장이용		<input type="checkbox"/> 중 지 <input type="checkbox"/> 폐 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명 칭		⑥주차장의형태	
부 설 주차장	⑦위 치		⑧ 규 모 (대 m ²)	
	⑨이용예정일		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⑪ <input type="checkbox"/> 이용주민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시설규모		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인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⑬ 이용중지또는폐지사유				
				수 수 료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 폐지 **신고필증**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
(중지·폐지)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의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청)인	처리기관(구청장)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고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접 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접수대장 등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검토(대장확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현장확인병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결 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교 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고필증작성</div>	

[별표 1]

위 반 행 위 별 과 징 금 액

(제20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주 차 장 법)	과 징 금 액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법 제15조제2항	250만원
2. 관리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 제15조제2항	100만원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위반된 때	법 제6조제1항	50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17조제2항	50만원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	50만원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 비고

위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제21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법 제12조제2항 관련)	100만원 이하
2.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노외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법 제12조제5항 및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 관련)	100만원 이하
3. 관리규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 관련)	100만원 이하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 관련)	50만원 이하
5.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 관련)	50만원 이하
6.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 관련)	50만원 이하
7.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의7 제2항 관련)	50만원 이하
8.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10제2항 관련)	50만원 이하
9. 주차장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5조제1항 관련)	50만원 이하

※비고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부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생략)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7조 내지 제10조(생략)</p> <p>(신 설)</p> <p>(신 설)</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제1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 공공시설로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 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p> <p>제3장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 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구청장은 영 제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시조례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 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 일까지로 한다.</p>

신 · 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p> <p>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은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규정을 신고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p> <p>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200분의 1이상일 것)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조</p> <p>제1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p> <p>제18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1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칙</p> <p>제11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 2 규정 및령 제17조에 의한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u>과징금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가감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2조(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0조(과징금처분)①.....<u>과징금은 별표1에 의거 부과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가감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2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